

도서관 영상자료 서비스 및 저작권에 관한 사서 인식조사*

Librarians' Perception on the Service of Cinematographic Works in Libraries and Copyright

최상희 (Sanghee Choi)**

정경희 (Kyoung-Hee Joung)***

이호신 (Ho-Sin Lee)****

초 록

영상자료는 점차 도서관에서 중요한 장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에서는 공연의 개념을 적용하여 공연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영상자료 사용에 대한 저작권 단체의 저작권료에 대한 요청도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도서관에서 실질적으로 영상자료를 다루고 있는 사서들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과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대응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영상자료의 중요성과 영상자료 관리상의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은 대학 및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여 총 292개의 응답을 받아 분석을 하였으며 2013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한 달간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사서들은 영상자료 및 영상자료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판매용 영상물 상영에 대한 저작권 면책 조건에 대한 사항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행일 6개월 미만의 영상자료 사용료를 지불하는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체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Cinematographic works are crucial for libraries as a part of their collections. Especially public libraries provide a variety of programs associated with cinematographic works. Copyright law considers the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as a type of public performance and restricted it under certain conditions such as the released date. In addition, copyright agency challenged libraries to pay fees for cinematographic works released within 6 months. At this poi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librarians on cinematographic works and copyright issues. 292 librarians in public and academic libraries answers the questionnaire form May 8th to June 7th, 2013. In result, librarians consider services of video works as a important part of library services. They are also conscious of the exception conditions for copyright law for cinematographic works provided by library services. Furthermore, even though librarians are aware of copyright issues, they show the negative response to copyright fees for playing cinematographic works in the libraries.

키워드: 영상자료, 공연, 저작권,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사서인식조사
cinematographic works, public performance, copyright, public libraries, academic libraries,
librarians' perception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본 연구 중 설문조사의 실시는 한국도서관협회 저작권 특별위원회의 활동의 일부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 실시에 한국도서관협회의 협조를 받았음.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조교수(shchoi@cu.ac.kr)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부교수(khjoung@hansung.ac.kr)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조교수(leehs@hansung.ac.kr)

■ 논문접수일자: 2013년 9월 5일 ■ 최초심사일자: 2013년 9월 20일 ■ 게재확정일자: 2013년 9월 23일
■ 정보관리학회지, 30(3), 317-335, 2013.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3.317]

1. 서론

최근 도서관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면서 지역사회의 문화적 거점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중심의 서비스에서 문화 복지서비스로 서비스영역을 확장하여 공연이나 전시,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도서관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에 관련된 저작권의 문제도 다변화되고 있는데 이중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영상자료는 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이며 공연은 영상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영상자료의 공연은 도서의 열람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범위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공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이호신, 2013).

저작권법 제2조 제3항에 의거하면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중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영상자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중요한 행위는 '상영'과 '재생'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에서 '상영'은 '공중이 시각적 또는 시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저작물을 모든 종류의 화면에 현시하는 행위 일체'로서 영상저작물뿐만 아니라 사진, 회화와 같은 정지 화면으로 이루어진 저작물이나 도표, 문자로 표시된 저작물도 상영에 의하여 공중에 현시하면 상영에 해당한다. '재생'은 '상연이나 연주

등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서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자료를 구매하여 기계적 또는 전자적으로 재생하는 방법으로 공중에게 들려주거나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은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를 도서관에서 구매를 하고 이용자들이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체제로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 '최초판매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상영'과 '재생'의 경우 개별 이용자들이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 적용에 대하여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저작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연권을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만 비영리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영상자료를 공연하였을 경우 저작권 제한을 두고 있다. 공공을 위하여 공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사회구성원에게 문화적 혜택을 고르게 주고자 하는 것이며 도서관은 이런 문화적 혜택을 주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법 제29조에서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방송에 대한 저작권 제한을 각각 제1항과 제2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 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

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서관이 영리적인 목적은 없이 관객이나 청중으로부터 입장료 등의 명목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서 실연자에게 통상의 사례비를 지불하지 않는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을 경우와 판매용음반이나 판매용영상물을 무료로 상영하였을 경우에는 저작권에 관한 면책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면책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 제11조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사항은 제8호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에 한해서는 저작권 면책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서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영상자료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영상산업협회를 비롯한 저작권 단체에서는 저작권 면책의 범위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저작권법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3월 영상자료 저작권위탁관리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수렴 공고에서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영상자료를 도서관 내에서 열람하는 것도 공연권의 적용을 받는 이용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도서관이 저작권을 지불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현재 도서관에서 발행 후 6개월 이내 영상자료를 이용하는 과정이 저작권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공연에 해당하므로 이용허락의 절차과정을 거쳐야 하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한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정경희, 2012). 이와 같이 도서관 내에서 영상자료를 1인이 열람하거나 프로그램에서 상영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면책 여부는 저작권위탁관리 단체와 도서관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영상산업협회가 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하여 월정액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서관에서 실제 영상자료를 관리하고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서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영상자료 중요성과 영상자료 관련 저작권에 대한 인식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여 현재 대두되고 있는 영상자료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중요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영상자료 저작권위탁관리 업체에서 도서관 영상자료 상영에 대하여 정액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서관에서는 정액제 도입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향후 영상자료 저작권 관련 의견 수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은 대학 및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여 총 292개의 응답을 받아 분석을 하였으며 2013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한 달간 조사를 수행하였다.

2. 도서관 관련 저작권 선행연구

도서관은 다양한 저작물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주요 기관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서비스의 범위와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저작권

이 각 나라별로 도서관에 적용되는 상황을 비교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제와 함께 저작권의 권리제한을 하는 조항도 마련하고 있다(윤희윤, 2010). 이는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저작자의 권리 측면만 강조하게 될 경우 정보에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제한 또는 공정사용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여 적용하는 나라가 많은데 권리제한 또는 공정사용 조항은 저작권자의 직접적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따르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와 같은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호기간 한정, 보상금제도, 저작권의 제한 등의 방식을 허용하고 있는데 도서관의 경우 저작물의 공공재적 특성을 반영하여 배타적인 권리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 서비스의 목적은 도서 등 저작물의 본래 가치를 이용하는 데 있기 때문에 공정 사용에 관한 미국 판례에서 침해를 인정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변형적인 이용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저작물 이용이 잠재적 시장에 주는 긍정적 영향도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적인 공정사용의 원칙에 따라 침해가 면책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정진근, 김형각, 2010). 특히 영미 국가에서는 공정사용에 대하여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Fair Dealing'으로 저작권 제한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미국은 저작권법 제107조 'Fair Use'에서 해당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별도로 공정사용에 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도 포괄적인 의미의 공정사용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지만, 한/EU FTA와 한미FTA의 비준에 따라 포괄적인 의미의 공정사용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의 개정 이 이루어졌다.

공연권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경우 저작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도서관과 같이 특정 기관에 특화하여 면책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Cochran, 1992; Heller, 1992). 반면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포괄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제한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저작권 제한의 사례가 열거된 조항은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8조까지 14개 종류에 해당한다. 이중 도서관에서 저작권 제한 규정인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에서의 복제 등'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제31조의 세부항목별 변화내용을 보면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에 관련된 것이 주요 내용이었고(김종철, 김영석, 2012) 공연권과 같은 다양한 매체에 해당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못하다.

국내에서 수행된 저작권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이 저작물 복제와 전송에 관련된 것이며(홍재현, 정경희, 이호신, 2005; 홍재현, 2013) 공정사용과 저작권에 인식에 관련하여 대학도서관 이용자와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어 온 사례(유양근, 2008; 최상희, 2007)가 있었다. 저작권 문제는 학술출판물 유통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어 오픈액세스 관련하여 다루어진 사례(심원식, 2012; 정경희, 2011)가 있었으나 정보서비스 측면에서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을 조사하여 분석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또한 대상 범위를 확장하여 기관레포지터리와 관련된 연구 중에서 저작권을 고려한 일부 연구가 있었는데(정영미, 이상기, 2010; 장금연, 2013) 특히 장금연(2013, p. 101)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관 레포지터리에 대한 교수들의 참여를 저하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고 기관레포지터리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소로 저작권 정책을 언급하였다.

매체와 관련된 저작권 연구는 많이 수행되고 있지 않지만 영상자료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대두되고 영상자료가 기반이 된 도서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에서 도서관의 공연권 문제를 다룬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 그중 하나는 도서관 업무 중 공연권과 연관된 연주회, 동화구연, 영상물 상영프로그램,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이용자 제공을 중심으로 저작권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연구한 사례(이호신, 2006)이며 영상물과 공공도서관이 관련된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관내 열람방식으로 영상물이 제공되는 현황을 분석한 사례가 있었다(정경희, 2012). 이 두 연구는 도서관에서의 공연권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이며 특히 영상물 관내 열람에 공연권 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도서관에서의 영상물 열람이 영상물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설문조사 범위 및 방법

설문조사는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지의뢰 공문을 발송한 뒤 설문 문항에 답을 기재하여 받는 방법으로 시행하였

다. 공공도서관 경우는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 단체회원 676개관에 설문지의뢰 공문을 발송한 뒤 협회 홈페이지에 설문지 파일을 게시하여 각 회원들이 이 파일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설문 결과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2013년 5월 8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한 달간 시행되었다. 공공도서관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204개 기관에 해당하였다.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대학도서관연합회에서 3개 산하협의회에 설문지의뢰 공문을 발송하여 산하협의회에서 소속 회원교 도서관에 다시 설문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절차를 거쳤다. 설문 결과는 소속 회원교에서 이메일로 발송하도록 하였으며 설문 기간은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20일간으로 설정하였다. 대학도서관 설문지는 91개 기관에서 회수되었으며 공공도서관 응답 설문지와 함께 분석을 수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총 수는 303개이나 이중 응답을 거의 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여 공공도서관 201개 대학도서관 91개를 총합하여 총 292개 설문응답을 분석하였다. 관종별 설문지 회수율은 <표 1> 설문지 회수율과 같으며 각 설문 항목별로 응답을 한 응답자수는 항목별로 차이가 있었다. 무응답에서는 응답 도서관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횡수가 0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무응답은 제외하고 각 항목별로 응답한 경우만 채택하여 총 응답자 수를 달리하여 설문 결과를 처리하였다.

<표 1> 설문지 회수율

관종	배포	회수	회수율
공공	676	201	30%
대학	258	91	35%
총계	934	292	31%

영상자료의 중요성과 영상자료 관련 업무의 문제점 및 영상자료 저작권료 징수 안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조사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첫째 영역은 도서관 장서로서 영상자료의 현황과 중요성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둘째 영역은 영상자료와 관련된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 지식수준을 조사하는 영역이다. 셋째 영역은 영상자료와 관련된 저작권 정보를 관리하는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조사한 영역이며 넷째 영역에서는 도서관이 저작권에 관련하여 영상자료를 이용하는 이용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관종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항목에서는 관종간 차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하여 관종별 차이가 유의한지를 분석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한 결과 관종별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저작권 면책조건 인지 경로, 저작권 정보확인 경로 및 저작권 교육 경험 항목이다.

4. 영상자료 서비스와 영상자료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조사

4.1 도서관 장서로서 영상자료 및 영상자료 서비스의 중요성

전체 응답자 292명 중 2명은 동일기관에서 응답을 하여서 응답을 한 기관수는 총 290개이다. <표 2> 영상자료 구매의 정기성은 기관에 해당하는 응답이므로 응답기관 수를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도서관에서 영상자료를 장서로서

정기적으로 수서하는 기관은 공공도서관 141개와 대학도서관 42개로 총 183개 기관에 해당하였다. 부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기관은 총 100개 기관으로 공공도서관 56개, 대학도서관 44개에 해당하였다. 관종별로 현황을 비교하면 공공도서관은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도서관이 응답한 도서관의 약 70%에 해당하였지만 대학도서관 경우 부정기적으로 구매하는 도서관 수가 정기적으로 구매한다는 도서관 수와 비등한 것으로 나타나 영상자료는 대학도서관보다 공공도서관에서 장서로서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로는 '학습용 영상자료만 구입한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를 통해서 구입한다', '최근 3년간 구매하지 않았음'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2> 영상자료 구매의 정기성

항목	공공	대학	총계
정기적으로 구매함	141(69.8%)*	42(47.7%)	183
부정기적으로 구매함	56(27.7%)	44(50%)	100
기타	5(2.5%)	2(2.3%)	7
총계	202(100%)	88(100%)	290

* 관종내 비율(이하 표에서 동일)

1년간 영상자료 구매 횟수에 대한 문항에는 공공도서관 188개와 대학도서관 81개가 응답하였다. 이 설문항목도 기관에 해당하는 항목이므로 기관별로 처리하였다. <표 3> 연간 영상자료 구매 횟수를 보면 1년에 3~4회 구입한다는 응답 기관이 91개로 가장 많았으며, 1년에 1~2회 구입한다는 응답도 86개로 유사한 수준으로 많았다. 관종별로 살펴보면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에 의해 수서하는 경우가 많아 연간 6회 이상인 기타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공공도서관은 정기적으로 영상자료를 구매하면서 연간 횟수가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에 반해 대학도서관은 영상자료를 정기적인 수서대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연간 영상자료 구매 횟수

구매 횟수	공공	대학	총계
연간 1~2회	68(36.2%)	18(22.2%)	86
연간 3~4회	74(39.4%)	17(21%)	91
연간 5~6회	23(12.2%)	15(18.5%)	38
연 6회 이상	23(12.2%)	31(38.3%)	54
총계	188(100%)	81(100%)	269

〈표 4〉 자료구입비 중 영상자료 구입비율도 기관에 해당하는 설문 항목으로 각 도서관의 연간 자료구입비에서 영상자료 구입비의 비율을 조사하는 질문에 공공도서관 195개관과 대학도서관 84개관을 포함하여 총 279개관이 응답하였다. 영상자료가 연간 자료구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0%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235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경우 11~20%에 해당하는 도서관도 31개에 해당하여 대학도서관보다는 영상자료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료구입비 중 영상자료 구입비율

영상자료 구입비율	공공	대학	총계
0%	4(2.1%)	2(2.4%)	6
1%-10%	154(79%)	81(96.4%)	235
11%-20%	31(15.9%)	0(0%)	31
21%-30%	3(1.5%)	0(0%)	3
31%-40%	2(1%)	0(0%)	2
41%-50%	1(0.5%)	0(0%)	1
제한규정 없음	0(0%)	1(1.2%)	1
총계	195(100%)	84(100%)	279

영상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한 설문에 공공도서관 사서 201명과 대학도서관 사서 89명이 응답한 그 결과 영상자료는 도서관 장서로서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서가 179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서관자료에 대한 보완자료로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99명이었으며,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서는 8명에 불과하여 도서관 자료로서 영상자료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 영상자료의 중요성 참조). 기타 의견으로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자료’, ‘종이자료를 대체할 매체임’, ‘도서정도로 중요함’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5〉 영상자료의 중요성

항목	공공	대학	총계
꼭 필요함	111(55.2%)	68(76.4%)	179
도서관자료에 대한 보완자료	79(39.3%)	20(22.5%)	99
중요하지 않음	8(4%)	0(0%)	8
기타	3(1.5%)	1(1.1%)	4
총계	201(100%)	89(100%)	290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가 영상자료를 대출하여 멀티미디어 열람실에서 1인 단독으로 영상자료를 열람하는 방식의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하여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여 ‘매우 중요하다’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5단계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표 6〉 1인 열람 방식의 영상자료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이 문항에는 공공도서관 사서 199명과 대학도서관 사서 89명인 총 288명이 응답하였으며, 그 결과 ‘중요하다’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가 166명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는 '보통이다'에 응답한 경우가 102명이었다. 관종별 차이점을 비교하면 공공도서관의 경우 1일 열람 방식의 영상 서비스 중요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반면 대학도서관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수의 약 2배에 해당하여 1일 열람방식 서비스는 대학도서관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1인 열람 방식의 영상자료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항목	공공	대학	총계
매우 중요하다	23(11.6%)	22(24.7%)	45
중요하다	78(39.2%)	43(48.3%)	121
보통이다	80(40.2%)	22(24.7%)	102
중요하지 않다	15(7.5%)	2(2.2%)	17
전혀 중요하지 않다	3(1.5%)	0(0%)	3
총계	199(100%)	89(100%)	288

도서관의 공연장 등에서 많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상자료를 상영하는 서비스중요도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는 〈표 7〉 공연 방식의 영상자료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같다. '중요하다' 이상으로 응답한 결과와 '보통이다'에 응답한 경우가 각각 147명과 116명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종별로 1인 열람방식의 중요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공공도서관의 경우 '중요하다'와 '보통이다'가 유사하게 나타나 이전 결과와 일관성을 보인 반면에 대학 도서관에서는 1인 열람방식에서 '중요하다'가 '보통이다'의 응답한 사서 수 약 2배에 해당한 것에 비해 공연방식 서비스 중요성에 대해서는 '중요하다'와 '보통이다'가 유사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응답도 1인 열람방식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도서관에서는 공연방식의 영상자료 서비스보다 1인 열람방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 공연 방식의 영상자료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항목	공공	대학	총계
매우 중요하다	17(8.7%)	13(14.8%)	30
중요하다	86(43.9%)	31(35.2%)	117
보통이다	81(41.3%)	35(39.8%)	116
중요하지 않다	11(5.6%)	7(8%)	18
전혀 중요하지 않다	1(0.5%)	2(2.3%)	3
총계	196(100%)	88(100%)	284

최근 영상물 저작권위탁관리 단체와 쟁점이 되고 있는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최신 영상자료 상영에 대하여 중요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8〉 최신 영상자료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같다.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최신 영상자료 상영이 도서관 서비스에 미치는 중요도를 묻는 문항에 공공도서관 사서 201명과 대학도서관 사서 89명이 응답한 결과에서는 '보통이다'가 128로 가장 많았다. '매우 중요하다'와 '중요하다'도 각각 30명과 89명이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보통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만약 문화관광부에서 영상물 저작권위탁관리 단체의 요청을 수렴하여 저작권 면책이 되는 기간을 발행 후 6개월 이후에서 더 장기간 후로 조정하게 될 경우 도서관이 영상자료 서비스를 할 때 최신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표 8〉 최신 영상자료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항목	공공	대학	총계
매우 중요하다	16(8%)	14(15.7%)	30
중요하다	63(31.3%)	26(29.2%)	89
보통이다	91(45.3%)	37(41.6%)	128
중요하지 않다	20(10%)	10(11.2%)	30
전혀 중요하지 않다	11(5.5%)	2(2.2%)	13
총계	201(100%)	89(100%)	290

〈표 9〉 영상자료의 저작권 면책 조건(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8항) 인지 여부

항목	공공	대학	총계
알고 있음	129(63.9%)	58(65.2%)	187
잘 모름	58(28.7%)	26(29.2%)	84
전혀 모름*	14(6.9%)	5(5.6%)	19
기타	1(0.5%)	0(0%)	1
총계	202(100%)	89(100%)	291

* 본 설문에서 면책조건을 처음 접한 경우

4.2 영상자료에 대한 저작권 인식

도서관이 영상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도서관에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자료를 공연의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해당 영상자료 사용에 대한 허락을 저작권자로부터 얻어야 한다는 사항이다. 현재 영상물 저작권위탁 단체에서는 도서관에서 6개월 이내의 영상자료를 상영하는 사례가 많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쟁점을 숙지하고 이와 같은 영상자료의 저작권 면책 조건에 대하여 사서들이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만약 사서들이 이와 같은 조항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도서관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 9〉 영상자료의 저작권 면책 조건(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8항) 인지 여부에서 나타나듯이 응답자 중 공공도서관 사서 129명과 대학도서관의 58명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응답자의 약 65%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29%에 해당하여 영상물 상영에 대한 면책 조건에 대해서는 사서들의 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에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그 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를 추가 응답하도록 한 결과, 291 응답자 중 207명의 응답자가 〈표 10〉 영상자료의 저작권 면책 조건(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8항) 인지 경로와 같이 면책조건을 알게 된 방법에 대하여 응답을 하였다. 자료를 통하여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동료 사서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차순으로 나왔다. 그에 비해 저작권 관련 교육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48명으로 비교적 적었다.

공공도서관은 동료 사서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대학도서관은 관련 자료를 통하여 스스로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관중별 차이점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저작권 면책조건 인지 경로에 대한 응답을 대상으로 카이 제곱 검정을 수행한 결과 유의확률이 0.045(<0.05)로 관중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저작권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서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차별화하여 저작권 관련 자료 배포와 사서들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표 10〉 영상자료의 저작권 면책 조건(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8항) 인지 경로

항목	공공	대학	총계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아 알게 되었음	30(21.3%)	18(27.3%)	48
동료 사서를 통하여 알게 되었음	55(39%)	13(19.7%)	68
관련 자료를 통하여 스스로 알게 되었음	49(34.8%)	29(43.9%)	78
기타	7(5%)	6(9.1%)	13
총계	141(100%)	66(100%)	207

추가적으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8항에 관련하여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자료를 공연의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서들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표 11〉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8항에 대한 인지 이후의 영상자료 구입 방법 참조). 설문 이전에 면책조건을 알고 있던 응답자와 설문 과정 중에 알게 된 응답자 292명 중 이후 구입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한 사서는 총 225명이었다. 응답 분석 결과 영상자료 구입은 기존과 같이 하여 최신자료를 장서로 구입하지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영은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자료를 위주로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구입 시부터 6개월이 지난 자료를 위주로 하겠다고 영상자료를 구입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85명이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사서들이 영상물을 도서관에서 상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되도록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사가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1〉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8항에 대한 인지 이후의 영상자료 구입 방법

항목	공공	대학	총계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자료 위주로 구입하겠음	53(33.8%)	32(47.1%)	85
구입은 기존과 같이 하되, 상영은 6개월 지난 영상 자료 위주로 틀어줄 것임	98(62.4%)	33(48.5%)	131
기준에 하던 대로 할 것임	2(1.3%)	0(0%)	2
기타	4(2.5%)	3(4.4%)	7
총계	157(100%)	68(100%)	225

도서관에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자료를 상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공공도서관의 경우 상영한 사례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표 12〉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자료의 상영 여부에서 나타나듯이 182명으로 공공도서관 응답자의 약 90%에 이르렀으며 대학도서관은 72명에 해당하여 대학도서관 응답자의 약 80%에 달하였다. 이는 〈표 9〉에서 나타나듯이 저작권 면책조건을 알고 있는 이용자가 64%(291명 중 187명)였던 분석과 일관된 결과로 영상저작물의 상영 면책 조건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던 것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즉, 발행 후 6개월 이내의 영상물을 상영하였을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연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자료의 상영 여부

항목	공공	대학	총계
공연한 사례 있음	20(9.9%)	17(19.1%)	37
공연한 사례 없음	182(90.1%)	72(80.9%)	254
총계	202(100%)	89(100%)	291

상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응답자에게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 모두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허락을 받지 않은 사유는 '허락의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산이 없다는 응답자도 5명 있었다(<표 13>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자료 상영 시 허락을 받지 않는 이유 참조). 기타 응답으로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몰랐다',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서 허락 받기도 어렵다', '공공기관에서 도서자료를 비영리적으로 열람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도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해도 된다고 보았다',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저작권료가 부담하다고 생각했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13>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자료 상영 시 허락을 받지 않는 이유

항목	공공	대학	총계
허락 방법을 몰라서	9(47.4%)	7(38.9%)	16
저작권료 자체가 부담하다고 생각되어서	0(0%)	2(11.1%)	2
예산이 없어서	3(15.8%)	2(11.1%)	5
기타	7(36.8%)	7(38.9%)	14
총계	19(100%)	18(100%)	37

4.3 저작권 관리상의 문제점

현재 도서관에서 영상자료를 상영할 때 가장 관건이 되는 영상자료 발행일 6개월 이후 조건을 파악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서관에서 영상자료의 발행시점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공공도서관 사서의 경우 영상자료에 밝혀진 날짜를 보고 파악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13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14> 발행시점을 파악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그 다음으로는 자관 도서관에 영상자료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발행시점을 입력해 놓는다는 응답자가 49명이었다. 한국영상자료원 등의 외부 정보원을 활용한다는 응답자도 28명 있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구매 시에 발행일을 확인'하거나, '납품서를 통하여 확인', '인터넷 검색, 판매업체나 구입업체에서 얻은 정보로 확인', '파악하고 있지 않음' 등의 답변이 있었다. 영상자료의 발행시점을 파악하는 방법은 복수 응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표 14> 발행시점을 파악하는 방법

항목	공공	대학	총계
자관 도서관에 영상자료 서지DB 구축시 발행시점을 입력해 놓음	25(12.2%)	24(25.5%)	49
한국영상자료원 등의 외부 정보원을 활용함	19(9.3%)	9(9.6%)	28
영상자료에 밝혀진 날짜를 보고 파악함	156(76.1%)	57(60.6%)	213
기타	5(2.4%)	4(4.3%)	9
총계	205(100%)	94(100%)	299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8항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자료에 대한 예외 규정에 저축이 되지 않으려면 발행시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발행' 시점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응답은 복수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 결과 DVD 등 영상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응답자가 19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DVD 등의 영상자료 발매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응답자가 50명, 영화개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응답자도 42명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DVD에 기재된 제작일을 발행일로 본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같이 발행 시점이 저작권의 면책 조건에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내에서 발행 시점을 파악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발행 시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파악되었다(〈표 15〉 발행 시점 기준에 대한 의견 참조).

〈표 15〉 발행 시점 기준에 대한 의견

항목	공공	대학	총계
DVD 등 영상자료 발매시점	31(15.3%)	19(21.3%)	50
영화개봉일 시점	28(13.9%)	14(15.7%)	42
DVD 등 영상자료에 있는 발행일	141(69.8%)	56(62.9%)	197
기타	2(1%)	0(0%)	2
총계	202(100%)	89(100%)	291

도서관에서 영상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을 관리하는 업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각 항목은 복수 응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영상자료 이용에 대한 허락절차가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22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저작권자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140명이었으며, 저작권자의 연락처 파악이 어렵다는 응답자도 100명이었다. 또한 영상자료의 발행일 파악이 어렵다는 응답자는 86명이었다. 〈표 16〉 저작권 관리상의 어려움에서 나타났듯이 저작권자의 허락절차에 대한 방법도 용이하게 되어 있지 못하고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와 연락처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도서관에서 영상자료 사례별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표 16〉 저작권 관리상의 어려움

항목	공공	대학	총계
영상자료의 발행일 파악	59(15.2%)	27(15.5%)	86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	91(23.5%)	49(28.2%)	140
저작권자의 연락처를 파악하는 것	71(18.3%)	29(16.7%)	100
영상자료 이용에 대한 허락절차가 번거로운 점	158(40.7%)	63(36.2%)	221
기타	9(2.3%)	6(3.4%)	15
총계	388(100%)	174(100%)	562

영상자료 저작권 관리와 관련하여 사서들이 받고 싶은 지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표 17〉 영상자료 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참조) 저작권 가이드라인이나 FAQ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영상자료의 저작권 문제를 상담해주는 웹사이트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관련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책자형태의 안내서를 지원받고 싶다는 응답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7〉 영상자료 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항목	공공	대학	총계
영상자료의 저작권 문제 상담을 해주는 웹사이트 운영	108(24.3%)	48(23.9%)	156
저작권가이드라인이나 FAQ	140(31.5%)	62(30.8%)	202
관련 교육	103(23.1%)	51(25.4%)	154
책자형태의 안내서	92(20.7%)	38(18.9%)	130
기타	2(0.4%)	2(1%)	4
총계	445(100%)	201(100%)	646

〈표 18〉 도서관 관련 저작권 정보 확보 경로

는 사서가 도서관과 관련한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파악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로 확보 경로에 대하여 복수 응답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관련 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한다는 경우가 15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관련 안내 책자를 통하여 88명, 주변 사서를 통하여 67명,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42명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서들에게 저작권에 관련된 정보를 안내할 경우에는 한국도서관협회나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도서관 대표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며 저작권 안내 책자 배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관중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관련기관 웹사이트나 안내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주변 사서도 중요한 저작권 정보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관련 저작권 확인 경로에 대한 관중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6(<0.05)으로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간에 저작권 정보 확보 경로측면에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8〉 도서관 관련 저작권 정보 확보 경로

항목	공공	대학	총계
주변 사서	56(20.8%)	11(9%)	67
관련 기관 웹사이트	103(38.3%)	53(43.4%)	156
관련 안내 책자	51(19%)	37(30.3%)	88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음	42(15.6%)	12(9.8%)	54
기타	17(6.3%)	9(7.4%)	26
총계	269(100%)	122(100%)	391

〈표 19〉 도서관 관련 저작권 교육 경험은 사서

들이 저작권에 관련되어 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인데 공공도서관의 응답자의 과반수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이 저작권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사실들은 전문가에 의한 교육보다는 개인적인 조사나 경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대학도서관의 경우 교육을 60%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공공도서관 사서들에 비하여 저작권 교육의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작권 교육경험에 관하여 관중별 차이가 있는지 증명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0(<0.05)으로 관중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여 공공도서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9〉 도서관 관련 저작권 교육 경험

교육 경험	공공	대학	총계
있음	72(36%)	54(60.7%)	126
없음	128(64%)	35(39.3%)	163
총계	200(100%)	89(100%)	289

사서들이 도서관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에 대하여 알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사서들이 가장 많이 알고 싶다고 응답한 항목은 도서관과 관련한 저작권 적용 및 침해 사례 정보였다. 차순으로 '도서관의 저작권 관련 전반적 동향', '매체별 저작권 적용 사례', '관련 법령 정보' 순으로 나타났다. 〈표 20〉 저작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에서 기술됐듯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FAQ나 침해사례와 같은 정보를 정리하여 사서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0〉 저작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

항목	공공	대학	총계
관련 법령 정보	79(16.6%)	25(12.4%)	104
도서관의 저작권 관련 전반적 동향	130(27.3%)	58(28.9%)	188
도서관의 저작권 적용 및 침해 사례	154(32.4%)	63(31.3%)	217
매체별 저작권 적용 사례	110(23.1%)	55(27.4%)	165
기타	3(0.6%)	0(0%)	3
총계	476(100%)	201(100%)	677

4.4 영상자료 정액제 사용료에 대한 의견

현재 영상자료 저작권위탁 단체에서 추진하고자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정액제 제도에 대해서 도서관 사서들의 입장을 조사한 결과는 〈표 21〉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사용료의 정액제 계약 의향과 같다.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월정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 대부분 계약을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최신 영상자료 정액제 도입을 추진하였을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21〉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사용료의 정액제 계약 의향

항목	공공	대학	총계
있음	15(7.5%)	6(6.8%)	21
없음	178(88.6%)	78(88.6%)	256
기타	8(4%)	4(4.5%)	12
총계	201(100%)	88(100%)	289

정액제로 계약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그 금액을 설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한 결과 정액제 계약 의향이 있는 21명과 없다고 응답하였어도 월정액에 의견이 있는 30명이 응답을 하여 총 51명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1명 중 20명) 공연 참석자수나 좌석수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정액제로 계약할 경우 최대한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복수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2〉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월정액과 같다. 월정액수 최저인 월 1~3만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지만 월 5천원 이내, 횟수당 1만원, 사용료 예산이 없으므로 잘 모르겠다 등의 응답 등 다양한 기타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도서관 사서들이 월정액 액수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월정액

월정액	공공	대학	총계
월 1~3만원	14(41.2%)	5(29.4%)	19
월 4~6만원	2(5.9%)	2(11.8%)	4
월 7~9만원	3(8.8%)	0(0%)	3
기타	15(44.1%)	10(58.8%)	25
총계	34(100%)	17(100%)	51

마지막으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월정액으로 계약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각 사유는 복수로 응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에서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영상자료를 공연하는데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이

리는 응답이 118명으로 가장 많았다(〈표 23〉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정액제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 참조). 또한 사용료까지 지불하면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자료를 공연해줄 필요는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자도 85명이나 되었다. 최신 영상자료 공연은 필요하지만 예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액제를 채택할 수 없다고 한 응답자는 63명이었다. 전체적으로 도서관은 공공기관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영상물을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작료를 면책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굳이 사용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최신 영상자료를 공연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3〉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정액제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

항목	공공	대학	총계
사용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발행 후 6개월 미만인 영상자료를 공연해줄 필요가 없음	60(31.3%)	25(29.4%)	85
최신 영상자료 공연은 필요하지만 예산상 부담이 되기 때문	51(26.6%)	12(14.1%)	63
도서관에서 공공을 위한 영상자료 공연을 하는데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반대함	74(38.5%)	44(51.8%)	118
기타	7(3.6%)	4(4.7%)	11
총계	192(100%)	85(100%)	277

5. 결론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사서들이 인식하고 있는 영상자료 및 영상자료 서비

스의 중요성과 저작권 관련 이슈들에 대한 292개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과 각 영역별로 도출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도서관 장서로서 영상자료의 현황과 중요성에 관련된 인식조사에서는 특히 공공도서관이 영상자료를 정기적으로 구매하며 장서로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영상자료 구입비율은 평균 10% 이내이었지만 공공도서관의 경우 10%를 상회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약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물 서비스의 방식에 대한 인식에서는 관종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학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보다 1인 열람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공공도서관의 경우 공연 형태의 영상물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대학도서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상자료와 관련된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수준을 조사하는 영역에서는 설문 응답자 중 약 65%가 도서관이 최신 영상물을 상영하는데 해당되는 저작권 면책조건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면책조건을 알게 된 경로로는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다른 사서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대학도서관은 자료를 통해 인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종별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저작권에 대한 주요 공지사항을 배포할 경우에는 이러한 관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영상물 상영에 대한 면책 기간이 발행일 6개월 이후라는 것을 인지한 후 영상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한 설문 응답으로는 최신자료를 구입하지만 상영은 6개월 이후 자료로 제한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셋째, 영상자료와 관련된 저작권 정보를 관리하는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조사한 영역에서 사서들이 저작권 관리측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발행일을 파악하는 방법이 영상자료에 기술되어 있는 날짜를 보고 파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발행시점을 파악하는 기준은 영상자료에 있는 발행일 외에 영상자료 발매시점, 영화개봉일 시점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발행일 기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저작권을 관리하는 업무 중 가장 어려운 점은 영상자료 이용에 대한 허락절차를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작권자 파악과 연락처 파악도 어려움이 있는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도서관이 영상자료를 상영하는데 개별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체제를 수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영상자료 저작권 관리와 관련하여 사서들이 받고 싶은 지원은 저작권 가이드라인이나 FAQ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보는 도서관의 저작권 적용 및 침해 사례인 것으로 나타나 사서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이 저작권에 관련하여 면책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최신 영상자료를 상영하는 저작권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도서관이 영상물을 도서관에서 상영하는데 저작권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영상물 저작권 위탁단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처럼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월정액으로 계약하는 체제를 추진하였을 경우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월정액으로 계약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약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도서관에서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영상자료를 공연하는데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저작권료까지 지불하면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자료를 공연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전체적으로 사서들은 도서관이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영상물을 상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었으며 비영리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영상물을 상영하는 경우는 저작권을 면책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에서는 영상자료를 공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의 영상자료 현황을 파악하고 영상자료를 공연할 때 문제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영상자료에 대한 도서관의 입장을 조사해보는 것도 향후 저작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은 도서관 관련 저작권 교육 자료를 만들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현황 파악과 인식조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종철, 김영석 (2012).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349-369.
- 심원식 (2012). 빅딜, 오픈액세스, 구글학술검색과 대학도서관의 전자학술정보구독. 정보관리학회지, 29(4), 143-163.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4.143>
- 유양근 (2008).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저작권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355-375.
- 윤희운 (2010).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비교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277-301. <http://dx.doi.org/10.4275/KSLIS.2010.44.4.277>
- 이호신 (2006).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공연권에 관한 연구. 도서관, 61(1), 45-62.
- 이호신 (2013). 도서관에서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249-268.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1.249>
- 장금연 (2013). 학술정보 유통을 위한 기관 레포지터리 운영모형 개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1), 93-109.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1.093>
- 정경희 (2011). 오픈액세스출판에 대한 학술지 편집인의 인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4), 183-200.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4.183>
- 정경희 (2012). 공공도서관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133-155.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3.133>
- 정영미, 이상기 (2010). 성공적인 리포지터리의 운영정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4), 131-152. <http://dx.doi.org/10.3743/KOSIM.2010.27.4.131>
- 정진근, 김형각 (2010). 저작권법상 도서관에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59), 146-182.
- 최상희 (2007). 대학도서관을 위한 정보 공정사용 지침 구성에 대한 조사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4(1), 367-383. <http://dx.doi.org/10.3743/KOSIM.2007.24.1.367>
- 홍재현 (2013).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315-343.
- 홍재현, 정경희, 이호신 (2005).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 개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505-525.
- Cochran, J. W. (1993). Why can't I watch this video here?: Copyright confusion and performances of video cassettes and video discs in libraries. *Hastings Communication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15, 837-892.
- Heller, J. S. (1992). The public performance right in libraries: Is there anything fair about it?. *Law Library Journal*, 84, 315-340.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oi, Sanghee (2007). A study on the fair use guidelines for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4(1), 367-383.
<http://dx.doi.org/10.3743/KOSIM.2007.24.1.367>
- Chung, Jin Keun, & Kim, Hyoung Gak (2010). A study about fair dealing clauses for library in copyright law in U.S. and Korea. *Creation & Rights*, (59), 146-182.
- Hong, Jae-Hyun (2013). The study on copyright limitations for activation of use of public work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315-343.
- Hong, Jae-Hyun, Joung, Kyoung-Hee, & Lee, Ho Sin (2005).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copyright guideline on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i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1), 505-525.
- Jang, Kum-Yeoun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university-based institutional repository operational model for scholarly information distribu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1), 93-109.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1.093>
- Joung, Kyoung-Hee (2011). Editor'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open access publish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4), 183-200.
<http://dx.doi.org/10.3743/kosim.2012.28.4.183>
- Joung, Kyoung-Hee (2012). A study on the limitation on the right of public performance in the individual watching cinematographic work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3), 133-155.
- Jung, Youngmi, & Lee, Sang-Gi (2010). A study on the operational policies and best practice of reposito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4), 131-152.
<http://dx.doi.org/10.3743/kosim.2010.27.4.131>
- Kim, Jong-Chul, & Kim, Young-Seok (2012). A study on the provision of the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of the Korean copyright act.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349-369.
- Lee, Ho Sin (2006). A study on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and performance right in libraries. *Doseogwan*, 61(1), 45-62.
- Lee, Ho Sin (2013). A study on limitation of public performance right for library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1), 249-268.

- Shim, Wonsik (2012). Big deal, open access, Google Scholar and the subscription of electronic scholarly contents at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4), 143-163.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4.143>
- Yoon, Hee Yoon (2010). A comparative analysis on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in major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4), 277-301.
- You, Yang Keun (2008). A study of user recognition of the copyright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1), 355-375.